

#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

## 해양부, 외국인해기사 승무자격증 발급 등

해양수산부는 선원신분증명서 제도 시행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 절차와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 관련 세부절차를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에 착수했다.

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,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절차 및 발급장비, 보안유지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련서식을 정하고,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 관련 세부절차를 정하며, 선원의 해외출국시 주무관청의 출국확인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.

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 공포(2005. 3. 31)로 선원신분증명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 절차, 발급장비 관리 및 보안유지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고,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 관련 세부절차를 정하며, 선원의 해외출국시 주무관청의 출국확인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지침개

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, 구직·구인등록기관을 지방해양수산청,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로 일원화하여 통계관리 등 선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8934호, 2005. 7. 5)으로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입국할 수 있는 자의 주무관청의 출국확인 삭제에 따라 선원출국확인을 삭제했다.

또 선원신분증명서 제도 시행에 따라 발급과 관련한 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및 도안, 교부절차, 발급장비 관리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, 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 신청과 관련한 승무자격증 발급 및 기재요령 등 세부절차를 규정했다.

이와함께 최소 승무정원산정을 위한 승무정원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외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도 제출하여 승무정원증서 교부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.

